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민선9기 3대 시정목표의 실현을 위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구성
-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 및 조직의 재배치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및 중앙정부 기준인력 배정에 따른 정원 관리

□ 주요내용

- 시장직속 시민소통관으로 신설하고, 시민소통업무 및 시장정책보좌기능을 강화함(안 제3조)
- 예산정책실(변경) : 부서 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 (안 제5조)
 - 예산법무과, 회계과, 공공건축과(이관), AI도시정책과(변경·이관), 정보통신과(변경·이관)
 - AI정책관과 첨단도시정보과의 업무를 재조정하여, AI도시정책과와 정보통신과로 변경함
 - 공공건축과를 예산정책실 산하로 배치하여 SOC분야 재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건축물의 관리업무를 일원화함
- 행정안전국 : 부서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6조)
 - 행정지원과, 자치협력과, 안전총괄과, 민원여권과, 미디어콘텐츠과(신설)
 - 미디어콘텐츠과를 신설하여 SNS미디어 정책 강화 및 현장소통과 연계된 홍보전략 추진함
- 민생경제국 : 부서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7조)
 - 민생경제과, 기업일자리과(변경), 세정과(이관), 납세지원과(이관), 징수과(이관)
 - 기업지원과를 기업일자리과로 변경하고, 기업지원업무와 민생경제과의

일자리지원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게 함

- 예산재정실의 세정과, 납세지원과, 징수과를 민생경제국으로 이관하여 민생경제와 연계성이 높은 세입업무를 별도 분리함

○ 돌봄복지국(변경) : 부서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8조)

- 통합돌봄과(변경), 복지지원과, 노인복지과(변경), 장애인복지과(신설)
- 복지정책국을 돌봄복지국으로 변경하고, 시민복지국을 분리·신설하여 복지분야의 조직기능을 강화함
- 복지정책과를 통합돌봄과로 변경하고, 통합돌봄 업무 및 보훈단체 지원기능을 강화함
-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하여 분야별 복지 업무의 추진을 세분화함

○ 시민복지국(신설) : 부서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9조)

- 여성가족과(이관), 보육아동과(이관), 청년청소년과(이관), 위생과(이관)
- 복지정책국의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청년청소년과를 시민복지국으로 이관하여 복지업무를 세분화함
- 신설되는 시민복지국의 국 단위 적정 통솔범위 및 인력운영관리를 위하여 민생경제국 위생과를 이관함

○ 도시발전국 : 부서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12조)

- 도시계획과, 균형개발과(폐지), 평화개발과(변경), 토지정보과, 도시부동산과(변경)
- 도시발전국의 균형개발과를 폐지하고 신도시개발업무는 도시계획과로 도시재생과 마을지원 업무는 부동산과로 이관하고, 부동산과는 도시부동산과로 변경함
- 평화경제과를 평화개발과로 변경하고 기업지원과의 산단관리·조성 업무를 도시발전국 산하 부서로 이관하여, 개발 업무 및 산단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함

- 건축주택국 : 부서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13조)
 - 건축디자인과, 허가총괄과(폐지), 허가1과, 허가2과, 허가3과(폐지), 주택과
 - 허가총괄과와 허가3과를 폐지하고, 건축주택국내 업무를 재배분하여 과단위 업무량을 조정함
- 환경국 : 부서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14조)
 - 환경정책과(변경), 기후에너지과(변경·이관), 자원순환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 기후위기대응과를 환경정책과로 변경하며, 환경정책 및 환경지도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를 세분화함
 - 중앙정부의 조직기구와 대응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국의 에너지과를 환경국으로 이관하며, 기후위기대응과의 지속가능업무와 탄소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기후에너지과로 이관함
- 도시관리사업본부 : 부서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25조)
 - 도시공원과(변경), 하천관리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신설), 산림정원과
 - 해당사무를 시민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과를 도시공원과로 변경함
 - 도로분야 업무량 증가를 감안하여, 도로관리과를 도로시설과와 분리하여 도로관리분야와 도로시설물분야를 세분화하여 운영함
- 운정권역 원격지 행정수요 충당을 위해 시청 직접 방문 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운정민원출장소를 신설함 (안 제27조)
- 파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함(1,898명 → 1,920명 / +22명) (안 제32조, 안 별표4)
- 신설된 문산보건지소 및 운정민원출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표기함 (안 별표1)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9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 기간: 2026. 10월중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6. 1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예정)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시민소통관을 둔다.

제3조제2항 중 “미래전략관, 감사관, AI정책관”을 “전략기획관, 감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미래전략관:”을 “전략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시민소통관: 시정홍보종합계획, 기획, 보도, 시민소통, 시정홍보물 제작, 직소민원, 특이민원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중 “예산재정실, 민생경제국,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을 “예산정책실, 행정안전국, 민생경제국, 돌봄복지국, 시민복지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예산재정실)”을 “(예산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예산재정실”을 “예산정책실”로, “세정과, 납세지원과, 징수과”를 “공공건축과, AI도시정책과, 정보통신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재정실장”을 “예산정책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회계결산·재산관리 및 청사관리”를 “회계결산·계약 및 재산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공건축물의 건립 추진 및 건립 지원,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AI) 및 도시정보·영상정보 등 첨단도시조성에 관한 사항

7. 전산, 통신 등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를 삭제하고, 제5조의2를 제7조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5조의2)제1항 중 “기업지원과, 에너지과, 위생과”를 “기업일자리과, 세정과, 납세지원과, 징수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공장설립”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에너지산업, RE100지원, 신재생에너지”를 “지방세·세외수입·세무조사 및 부과 징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6조 앞의 “제2절 농업기술센터”를 삭제한다.

제20조 앞의 “제4장 사 업 소”를 삭제한다.

제26조 앞의 “제6장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삭제한다.

제24조를 제30조로 하고, 제21조를 제24조로 하며, 제18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5조를 제18조로 하며, 제12조를 제15조로 한다.

제5장제25조를 제6장제31조로 하고, 제22조를 제25조로 하며, 제19조를 제22조로 하고, 제16조를 제19조로 하며, 제13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며,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26조를 제32조로 하고, 제23조를 제26조로 하며, 제20조를 제23조로 하고, 제17조를 제20조로 하며, 제14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1조의2를 제14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민원여권과”를 “민원여권과, 미디어콘텐츠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SNS 등 미디어홍보에 관한 사항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돌봄복지국) ① 돌봄복지국에 통합돌봄과, 복지지원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를 둔다.

② 돌봄복지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복지정책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3. 복지지원의 기획·조정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노인·장애인 복지 및 장묘에 관한 사항

제9조(시민복지국) ① 시민복지국에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청년청소년과, 위생과를 둔다.

② 시민복지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여성·가족 복지에 관한 사항
2.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3. 청년 및 청소년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식품정책 및 위생에 관한 사항

제11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주차관리과, 첨단도시정보과”를 “주차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중전의 제2호) 중 “물류”를 “물류, 교통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12조(중전의 제10조)제1항 중 “균형개발과, 평화경제과, 공공건축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과”를 “평화개발과, 토지정보과, 도시부동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허가총괄과”를 “건축디자인과”로, “허가3과, 주택과, 건축디자인과”를 “주택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및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1호) 중 “개발행위, 공장설립”을 “개발행위”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1조의2)제1항 중 “기후위기대응과”를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에너지산업, RE100지원,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제12조 앞의 “제3장 직 속 기 관”을 삭제한다.

제12조 앞의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를 삭제한다.

제1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직 속 기 관

제15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제16조(중전의 제13조)제2항 중 “과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19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2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사 업 소

제25조(중전의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사업소에 두는 과) 도시관리사업본부에 도시공원과, 하천관리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산림정원과를 둔다.

제26조(중전의 제23조)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2호) 가목 중 “친수공간조성 및 공원”을 “공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하천”을 “친수공간조성 및 하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하 부 행 정 기 관”을 “출 장 소”로 한다.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로 하고,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설치) ① 법 제1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출장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8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출장소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여권발급, 가족관계의 등록 등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3. 건축신고 및 부동산취득세신고에 관한 사항

제3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하 부 행 정 기 관

제3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제32조(중전의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898명”을 “1,9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864명”을 “1,88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34명”을 “35명”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예산재정실장”을 “예산정책실장”으로 하고, “미래전략관”을 “전략기획관”으로 한다.

②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소관부서란 중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로 하고, “부동산과”를 “도시부동산과”로 한다

③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주관부서란 중 “기업지원과”를 “기후에너지과”로 하고, “기후위기 대응과”를 “환경정책과”로 하며, “일자리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한다.

소관 부서		행정지원과 ☎ 940-8604
입안자	행정지원과장	최 희 진
	조직팀장	이 은 경
	담당자	박 장 호

[별표 1]

본청 · 소속기관 ·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제2조 관련)

기관별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본 청	파 주 시 청	파주시 시청로 50(아동동)	
직 속 기 관	파 주 보 건 소	파주시 후곡로 13(금촌동)	파주시 일원
	(문산보건지소)	파주시 문산읍 개포대로 34	문산읍 일원
	(탄현보건지소)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649번길 24-7	탄현면 일원
	(월릉보건지소)	파주시 월릉면 엘지로 17	월릉면 일원
	(적성보건지소)	파주시 적성면 청송로 1013	적성면 일원
	(파평보건지소)	파주시 파평면 청송로 189-21	파평면 일원
	(야당보건진료소)	파주시 운정로 18(상지석동)	운정4동 일원
	(웅담보건진료소)	파주시 법원읍 곰시길 173-7	웅담·직천·오현리 일원
	(영장보건진료소)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9	영장·기산리 일원
	(문지보건진료소)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955번길 131	문지·오금·낙하·금승리 일원
	(어유지보건진료소)	파주시 적성면 어삼로 34	장현·어유지·적암·울포리 일원
	(두마보건진료소)	파주시 파평면 파평산로363번길 34	마산·두포·금곡리 일원
	(백연보건진료소)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길 231	백연·조산·동파리 일원
	운 정 보 건 소	파주시 금바위로 44(와동동)	교하·운정1·운정2·운정3·운정4·운정5·운정6동 일원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파주시 통일로 600(아동동)	파주시 일원
사업소	도시관리사업본부	파주시 경의로 1180(와동동)	
	차 량 등 록 사 업 소	파주시 문산읍 개포대로 48	
	중 앙 도 서 관	파주시 쇄재로 33(금촌동)	
	교 하 도 서 관	파주시 숲속노을로 256(동패동)	
	문 산 도 서 관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671	
출장소	운 정 민 원 출 장 소	파주시 경의로 1180(와동동)	

기 관 별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하부행정 기 관	문 산 읍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	
	조 리 읍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4	
	법 원 읍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907번길 21	
	파 주 읍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파주읍 술이홀로 295	
	광 탄 면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광탄면 해음로 1044	
	탄 현 면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649번길 24-7	
	월 룡 면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17	
	적 성 면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적성면 청송로 1013	
	파 평 면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파평면 청송로 189-21	
	장 단 면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길 220	
	교 하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교하로 1401(교하동)	
	운 정 1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와동동)	
	운 정 2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와동동)	
	운 정 3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교하로 239(동패동)	
	운 정 4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하우3길 77(야당동)	
	운 정 5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돌단풍길 34(문발동)	
	운 정 6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청석로 115, 5층(동패동)	
	금 촌 1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새꽃로 215(아동동)	
	금 촌 2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쇠재로 115(금촌동)	
	금 촌 3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시청로 194(아동동)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제3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 · 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 ※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 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 · 면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3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 이내	6% 이내	24% 이내	33% 이내	28% 이내	7% 이상	1%이내

※ 비고: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9% 이내	91% 이상

※ 비고: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이하
비 율	-	40% 이내	40% 이내	20% 이상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34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동	의 회 사무국
총 계	1,920	1,920				
정무직 소계	1	1				
시장	1	1				
일반직 소계	1,873	1,873				
2급	1	1	-	-	-	-
3·4급	1	1	-	-	-	-
4급	13	9	2	1	-	1
5급	91	49	12	8	20	2
6급 이하	1,765	1,765				
전문경력관	2	2				
연구직 소계	5	5				
연구사	5	5				
지도직 소계	36	36				
지도관	0	-				
지도사	36	36				
별정직 소계	5	5				
5급 상당	2	2				
6급 상당 이하	3	3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보좌기관) ① <u>시장 밑에 소통홍보관을 둔다.</u>	제3조(보좌기관) ① <u>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시민소통관을 둔다.</u>
② <u>부시장 밑에 미래전략관, 감사관, AI정책관</u> 을 둔다.	② ----- <u>전략기획관, 감사관</u> -----.
③ 보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u>소통홍보관</u> : 시정홍보 종합계획·기획·보도, 시민소통, 시정홍보물 제작 등에 관한 사항	1. <u>시민소통관</u> : 시정홍보종합계획, 기획, 보도, 시민소통, 시정홍보물 제작, 직소민원, 특이민원 등에 관한 사항
2. <u>미래전략관</u> : 시정전략 기획, 성과관리 및 전략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2. <u>전략기획관</u>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u>AI정책관</u> : 인공지능(AI) 및 <u>전산, 통신 등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u>	<u><삭 제></u>
제4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예산재정실, 민생경제국,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환경국</u> 을 둔다.	제4조(실·국의 설치) ----- ----- <u>예산정책실, 행정안전국, 민생경제국, 돌봄복지국, 시민복지국</u> ----- ----- -----.
제5조(<u>예산재정실</u>) ① <u>예산재정실</u> 에 예산법무과, 회계과, <u>세정과</u> ,	제5조(<u>예산정책실</u>) ① <u>예산정책실</u> ----- <u>공공건축</u>

납세지원과, 징수과를 둔다.

② 예산재정실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3. (생략)
4. 회계결산·재산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세외수입·세무조사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신설>

<신설>

제5조의2(민생경제국) ① 민생경제국에 민생경제과, 기업지원과, 에너지과, 위생과를 둔다.

② 민생경제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생략)
2. 중소기업 및 노사 지원, 투자유치,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산업, RE100지원,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과, AI도시정책과, 정보통신과-----.

② 예산정책실장-----.

1. ~ 3. (현행과 같음)
4. 회계결산·계약 및 재산관리-----
5. 공공건축물의 건립 추진 및 건립 지원,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AI) 및 도시정보·영상정보 등 첨단도시조성에 관한 사항
7. 전산, 통신 등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민생경제국) ① -----
----- 기업일자리
과, 세정과, 납세지원과, 징수과
-----.

② -----.

1. (현행과 같음)
2. -----
---- 공장설립-----
3. 지방세·세외수입·세무조사 및 부과 징수-----

4. 식품정책 및 위생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삭 제>

제8조(돌봄복지국) ① 돌봄복지국에 통합돌봄과, 복지지원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를 둔다.

② 돌봄복지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복지정책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3. 복지지원의 기획·조정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노인·장애인 복지 및 장묘에 관한 사항

제9조(시민복지국) ① 시민복지국에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청년청소년과, 위생과를 둔다.

② 시민복지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여성·가족 복지에 관한 사항
2.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3. 청년 및 청소년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행정안전국) ① 행정안전국
에 행정지원과, 자치협력과, 안
전총괄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의 사무
를 분장한다.

1. ~ 4. (생략)

<신설>

제7조(복지정책국) ① 복지정책국
에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
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
아동과, 청년청소년과를 둔다.

② 복지정책국장은 다음의 사무
를 분장한다.

1. 복지정책의 기획·조정 에 관
한 사항

2. 복지지원의 기획·조정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노인·장애인 복지 및 장묘
에 관한 사항

4. 여성·가족 복지에 관한 사
항

4. 식품정책 및 위생에 관한 사
항

제6조(행정안전국) ① -----

----- 민원여권과, 미디어콘
텐츠과-----

~.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SNS 등 미디어홍보에 관한
사항

<삭제>

5.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6. 청년 및 청소년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 (생략)

제9조(도로교통국) ① 도로교통국에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도로건설과, 주차관리과, 첨단도시정보과를 둔다.

② 도로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2. 교통정책 및 개선, 철도·택시 및 물류에 관한 사항

3. ~ 5. (생략)

6. 교통정보·도시정보 및 영상정보 등 첨단도시조성에 관한 사항

제10조(도시발전국) ① 도시발전국에 도시계획과, 균형개발과, 평화경제과, 공공건축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과를 둔다.

② 도시발전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생략)

2. (생략)

제10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11조(도로교통국) ① -----

----- 주차관리과-----
-----.

② -----
-----.

1. -----
-- 물류, 교통정보-----

2. ~ 4.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삭제>

제12조(도시발전국) ① -----
----- 평화개발과,
토지정보과, 도시부동산과-----
-----.

② -----
-----.

1. (현행과 같음)

6.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3. (생 략)

4. 공공건축물의 건립 추진 및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 6. (생 략)

제11조(건축주택국) ① 건축주택
국에 허가총괄과, 허가1과, 허가
2과, 허가3과, 주택과, 건축디자
인과를 둔다.

② 건축주택국장은 다음의 사무
를 분장한다.

1. 건축, 개발행위, 공장설립, 산
지 및 농지 인허가에 관한 사
항

2. (생 략)

3. (생 략)

제11조의2(환경국) ① 환경국에
기후위기대응과, 자원순환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를 둔다.

② 환경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생 략)

<신 설>

2. ~ 4. (생 략)

3.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
한 사항

2. (현행 제3호와 같음)

<삭 제>

4. · 5.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13조(건축주택국) ① -----

--- 건축디자인과-----

----- 주택과-----

-----.

② -----

-----.

2. -----

-- 개발행위---

3. (현행 제2호와 같음)

1.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4조(환경국) ① -----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

② -----

-----.

1. (현행과 같음)

2. 에너지산업, RE100지원, 신
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

제3장 직 속 기 관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신 설>

<신 설>

제12조 (생 략)

제13조(소장) ① (생 략)

② 보건소장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총괄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제15조 (생 략)

제2절 농업기술센터

<신 설>

제16조 ~ 제19조 (생 략)

제4장 사 업 소

<신 설>

제20조·제21조 (생 략)

제22조(사업소에 두는 과) 사업소
에 두는 과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까지와 같음)

<삭 제>

<삭 제>

제3장 직 속 기 관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제15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6조(소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장-----

-----.

제17조·제18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삭 제>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9조 ~ 제22조 (현행 제16조부
터 제19조까지와 같음)

<삭 제>

제4장 사 업 소

제23조·제24조 (현행 제20조 및
제21조와 같음)

제25조(사업소에 두는 과) 도시관
리사업본부에 도시공원과, 하천
관리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

1. 삭 제

2. 도시관리사업본부: 도시관리
과, 하천관리과, 도로관리과,
산림정원과

제23조(소관사무) 사업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2. 도시관리사업본부

가. 친수공간조성 및 공원(수
변공원을 포함한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다.·라. (생략)

4.·5. (생략)

6. (생략)

제5장 하 부 행정 기 관
<신 설>

<신 설>

과, 산림정원과를 둔다.

제26조(소관사무) -----
-----.

1. -----
--

가. 공원-----

나. 친수공간조성 및 하천---

다.·라. (현행과 같음)

2.·3.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4. (현행 제6호와 같음)

제5장 출 장 소

제27조(설치) ① 법 제128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
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
기 위하여 시에 출장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
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
다.

제28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
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

<신 설>

<신 설>

제24조 · 제25조 (생 략)

제6장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신 설>

제26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1,898 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1,86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4명

제27조 ~ 제29조 (생 략)

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출장소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여권발급, 가족관계의 등록 등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3. 건축신고 및 부동산취득세신고에 관한 사항

제6장 하 부 행정 기관

제30조 · 제31조 (현행 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음)

<삭 제>

제7장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제32조(정원의 총수) -----
----- 1,920명

-----.

1. ----- 1,885명
2. ----- 35명

제33조 ~ 제35조 (현행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와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 명 및 관련조문

○ 「과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연간)

○ (전제)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요구 단가 기준

- 4급(연봉), 5급(연봉), 6급이하(7급 10호봉기준)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일반직		
			4급	5급	6급이하
계	인 원	22	1	1	20
	예산액	960	106	94	760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3.9%)을 고려한 인건비 추계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총 소요액	5,189	960	997	1,036	1,077	1,119
인 건 비	5,189	960	997	1,036	1,077	1,119

다. 재원조달방안: 2027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장 최희진 조직팀장 이은경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세 입		5,189	960	997	1,036	1,077	1,119
인 건 비		5,189	960	997	1,036	1,077	1,119
세 출		5,189	960	997	1,036	1,077	1,119
인 건 비		5,189	960	997	1,036	1,077	1,119
재 원 조 달		5,189	960	997	1,036	1,077	1,119
자 체 수 입	소 계	5,189	960	997	1,036	1,077	1,119
	지방세	5,189	960	997	1,036	1,077	1,119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과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23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주시 본청과 소속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지방공무원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사무분장 및 소재지 등) ① 과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국장·과장 및 담당관, 소속기관 및 그 하부조직의 장,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②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본 청

제3조(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소통홍보관을 둔다.

② 부시장 밑에 미래전략관, 감사관, AI정책관을 둔다. <개정 2026. 4. 23>

③ 보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4. 23>

1. 소통홍보관: 시정홍보 종합계획·기획·보도, 시민소통, 시정홍보물 제작 등에 관한 사항
2. 미래전략관: 시정전략 기획, 성과관리 및 전략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6.>

3. 감사관: 본청·산하기관 감사, 공무원 비위조사·처리, 시민고충사항·애로
사항 상담 및 옴부즈만·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

4. AI정책관: 인공지능(AI) 및 전산, 통신 등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재정실, 민생경
제국,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
주택국, 환경국을 둔다. <개정 2023. 12. 26., 2024. 12. 26., 2025. 9. 30>

[제목개정 2023. 12. 26.]

제5조(예산재정실) ① 예산재정실에 예산법무과, 회계과, 세정과, 납세지원
과, 징수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2025.9.30>

② 예산재정실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2025. 9.
30>

1. 예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
2. 의회·법제·통계에 관한 사항
3. 행정심판·소송·규제개혁 정책추진
4. 회계결산·재산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세외수입·세무조사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2. 26.]

제5조의2(민생경제국) ① 민생경제국에 민생경제과, 기업지원과, 에너지과,
위생과를 둔다.

② 민생경제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 진흥 및 소상공인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및 노사 지원, 투자유치,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산업, RE100지원,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4. 식품정책 및 위생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9. 30]

제6조(행정안전국) ① 행정안전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협력과, 안전총괄과, 민
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2026. 4. 23>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2025. 9.
30., 2026. 4. 23>

1. 복무·후생복지 및 인사·조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행정구역, 선거관리, 주민자치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자연·인적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주민·가족관계의 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6. 4. 23>

[제목개정 2023. 12. 26.]

제7조(복지정책국) ① 복지정책국에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청년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② 복지정책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1. 복지정책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복지지원의 기획·조정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노인·장애인 복지 및 장묘에 관한 사항
4. 여성·가족 복지에 관한 사항
5.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6. 청년 및 청소년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문화교육국) ① 문화교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평생교육과, 체육과를 둔다.

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1. 7.>

1. 문화·예술의 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 관광마케팅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교지원, 독서진흥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4.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9조(도로교통국) ① 도로교통국에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도로건설과, 주차관리과, 첨단도시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② 도로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1. 삭제 <2023. 12. 26.>
2. 교통정책 및 개선, 철도·택시 및 물류에 관한 사항
3. 버스정책 및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건설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책 등에 관한 사항
5. 주차정책·주차시설 및 주차질서에 관한 사항
6. 교통정보·도시정보 및 영상정보 등 첨단도시조성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2. 26.]

제10조(도시발전국) ① 도시발전국에 도시계획과, 균형개발과, 평화경제과, 공공건축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② 도시발전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2025. 9. 30.>

1. 도시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3.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유치 및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
4. 공공건축물의 건립 추진 및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적정리 및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
6. 부동산거래신고 등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건축주택국) ① 건축주택국에 허가총괄과, 허가1과, 허가2과, 허가3과, 주택과, 건축디자인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② 건축주택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1. 건축, 개발행위, 공장설립, 산지 및 농지 인허가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개발·관리,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환경국) ① 환경국에 기후위기대응과, 자원순환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를 둔다.

② 환경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자원재활용, 청소 및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기업회계, 상수도 시설공사, 마을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관리 등 하수도 정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12. 26., 제11조의1 조문이동 2025. 9. 30]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제12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다음 각 호의 보건소를 설치하며, 보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파주보건소를 총괄보건소로 한다.

1. 파주보건소

2. 운정보건소

② 「지역보건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소장)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총괄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보건소에 두는 과) 파주보건소에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

과, 문산보건센터를 둔다. <개정 2023. 12. 26., 2025. 5. 7.>

제15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6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업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7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동물관리과, 도시농업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제1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유통, 경쟁력 제고 및 농업 마케팅에 관한 사항
3.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동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5. 내수면 개발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관광농업, 농어촌 구조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식량·원예·특용·특화작물의 생산, 재배기술의 개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업개발, 농촌지도, 축산·어업에 관한 사항

제4장 사 업 소

제20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1조(사업소의 장) 사업소에 각각 본부장, 소장, 관장을 두며, 사업소의 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사업소에 두는 과) 사업소에 두는 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3., 2024. 12. 26.>

1. 삭제 <2024. 12. 26.>

2. 도시관리사업본부: 도시관리과, 하천관리과, 도로관리과, 산림정원과

제23조(소관사무) 사업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2024. 6. 3., 2024. 12. 26., 2025. 5. 7.>

1. 삭제 <2024. 12. 26.>

2. 도시관리사업본부

- 가. 친수공간조성 및 공원(수변공원을 포함한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나.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다. 도로의 관리, 유지보수 및 가로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라. 녹지의 조성 및 산림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 6. 3.>

4.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등록, 정기검사 및 검사관련 과태료 징수

5. 중앙도서관: 도서관 정책 수립, 도서 및 기록물의 비치·열람,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하도서관, 문산도서관: 도서 및 기록물의 비치·열람,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하 부 행정 기관

제24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소관사무) 읍·면·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리·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분장한다.

제6장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제26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1,898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23>

1. 집행기관의 정원: 1,86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4명

제27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8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9.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5. 5. 7.>

본청 · 소속기관 ·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제2조 관련)

기관별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본 청	파 주 시 청	파주시 시청로 50(아동동)	
직 속 기 관	파 주 보 건 소	파주시 후곡로 13(금촌동)	파주시 일원
	(탄현보건지소)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649번길 24-7	탄현면 일원
	(월릉보건지소)	파주시 월릉면 엘지로 17	월릉면 일원
	(적성보건지소)	파주시 적성면 청송로 1013	적성면 일원
	(파평보건지소)	파주시 파평면 청송로 189-21	파평면 일원
	(야당보건진료소)	파주시 운정로 18(상지석동)	운정4동 일원
	(웅담보건진료소)	파주시 법원읍 곰시길 173-7	웅담·직천·오현리 일원
	(영장보건진료소)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9	영장·기산리 일원
	(문지보건진료소)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955번길 131	문지·오금·낙하·금승리 일원
	(어유지보건진료소)	파주시 적성면 어삼로 34	장현·어유지·적암·율포리 일원
	(두마보건진료소)	파주시 파평면 파평산로363번길 34	마산·두포·금곡리 일원
	(백연보건진료소)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길 231	백연·조산·동파리 일원
	운 정 보 건 소	파주시 금바위로 44(와동동)	교하·운정1·운정2·운정3·운정4·운정5·운정6동 일원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파주시 통일로 600(아동동)	파주시 일원
사업소	도시관리사업본부	파주시 경의로 1180(와동동)	
	차 량 등 록 사 업 소	파주시 문산읍 개포레로 48	
	중 양 도 서 관	파주시 쇄재로 33(금촌동)	
	교 하 도 서 관	파주시 숲속노을로 256(동패동)	
	문 산 도 서 관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671	

기 관 별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하부행정 기 관	문 산 읍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	
	조 리 읍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4	
	법 원 읍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907번길 21	
	파 주 읍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파주읍 술이홀로 295	
	광 탄 면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1044	
	탄 현 면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649번길 24-7	
	월 룡 면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17	
	적 성 면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적성면 청송로 1013	
	파 평 면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파평면 청송로 189-21	
	장 단 면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길 220	
	교 하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교하로 1401(교하동)	
	운 정 1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와동동)	
	운 정 2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와동동)	
	운 정 3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교하로 239(동패동)	
	운 정 4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하우3길 77(야당동)	
	운 정 5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돌단풍길 34(문발동)	
	운 정 6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청석로 115, 5층(동패동)	
	금 촌 1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새꽃로 215(아동동)	
	금 촌 2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쇄재로 115(금촌동)	
	금 촌 3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시청로 194(아동동)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27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 · 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 ※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 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 · 면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개정 2024. 12. 26.>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27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 이내	6% 이내	24% 이내	33% 이내	28% 이내	7% 이상	1%이내

※ 비고: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9% 이내	91% 이상

※ 비고: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이하
비 율	-	40% 이내	40% 이내	20% 이상

[별표 4] <개정 2026. 4. 2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28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동	의 회 사무국
총 계	1,898	1,898				
정무직 소계	1	1				
시장	1	1				
일반직 소계	1,851	1,851				
2급	1	1	-	-	-	-
3·4급	1	1	-	-	-	-
4급	12	8	2	1	-	1
5급	90	48	12	8	20	2
6급 이하	1,744	1,744				
전문경력관	3	3				
연구직 소계	5	5				
연구사	5	5				
지도직 소계	36	36				
지도관	0	-				
지도사	36	36				
별정직 소계	5	5				
5급 상당	2	2				
6급 상당 이하	3	3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6A경기파주055)

1. 행정지원과-28912(2026.10.07)호와 관련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여 성 가 족 과 장

김영미

여성정책전문위

원 권문영

여성정책팀장 조영라

여성가족과장

2026. 10. 8.

김영미

협조자

시행 여성가족과-20059

(2026. 10. 8.)

접수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복지동 1층 여성가족과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684

팩스번호 031-940-4419

/ myjihee@korea.kr

/ 비공개(5)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
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 행정지원과-28915(2026. 10. 7.)와 관련됩니다.
2.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9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부패영향평가 결과

관리번호	주관부서	자치법규명	평가결과
2026-55	행정지원과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원안동의
2026-56	행정지원과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원안동의

- 붙임 1. 결과통보서 각 1부.
2. 조례 개정안 각 1부. 끝.

감 사 관

주무관	윤수진	감시2팀장	이선	감사관	전결 2026. 10. 7. 유대승
협조자					
시행	감사관-12073	(2026. 10. 7.)	접수	행정지원과-29132	(2026. 10. 7.)
우	10930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 감사관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5840	팩스번호	031-940-4089	/ yoon55@korea.kr	/ 비공개(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6-55		
자치법규명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	행정7급 윤수진
주 관 부 서	행정지원과	주 관 부 서 담 당 직 급 및 성 명	행정7급 박장호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6. 10. 7.		
통 보 내 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회신[「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외 1건](일부개정안)

1. 행정지원과-28914(2026. 10. 7.)호와 관련합니다.
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규제영향분석 심사결과

소관부서	자치법규명	심사의견
행정지원과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규제 해당사항 없음

붙임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서 각 1부. 끝.

예산법무과장 

주무관	권성원	규제개혁동계 팀장	김선정	예산법무과장	이재면	2026. 10. 7.
협조자						
시행	예산법무과-18499	(2026. 10. 7.)	접수	행정지원과-29140	(2026. 10. 7.)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059	/ ksw8732@korea.kr	/ 비공개(5)	

규제영향분석심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	팀장 이은경 담당자 박장호
3. 관련법령 등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9조	
4. 주요골자	○ 시장직속기관인 시민소통관 신설로 시민소통업무 및 시장정책 보좌기능 강화(안 제3조) ○ 예산정책실(변경) : 부서 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 (안 제5조) - 예산법무과, 회계과, 공공건축과(이관), AI도시정책과(변경·이관), 정보통신과(변경·이관) ○ 행정안전국 : 부서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6조) - 행정지원과, 자치협력과, 안전총괄과, 민원여권과, 홍보기획과(변경·이관) ○ 민생경제국 : 부서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7조) - 민생경제과, 기업일자리과(변경), 세정과(이관), 납세지원과(이관), 징수과(이관) ○ 돌봄복지국(변경) : 부서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8조) - 통합돌봄과(변경), 복지지원과, 노인복지과(변경), 장애인복지과(신설) ○ 시민복지국(신설) : 부서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9조) - 여성가족과(이관), 보육아동과(이관), 청년청소년과(이관), 위생과(이관) ○ 도시발전국 : 부서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12조) - 도시계획과, 균형개발과(폐지), 평화개발과(변경), 토지정보과, 도시부동산과(변경) ○ 건축주택국 : 부서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13조) - 건축디자인과, 허가총괄과(폐지), 허가1과, 허가2과, 허가3과(폐지), 주택과 ○ 환경국 : 부서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14조) - 기후에너지과(변경·이관), 환경정책과(변경), 자원순환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 도시관리사업본부 : 부서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25조) - 도시공원과(변경), 하천관리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신설), 산림정원과 ○ 운정권역 원격지 행정수요 충당을 위해 시청 직접 방문 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운정민원출장소를 신설함(안 제27조) ○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1,898명 → 1,920명/+22명) (안 제32조, 안 별표4) ○ 신설된 문산보건지소 및 운정민원출장소 명칭 및 소재지 표기(안 별표1)
5. 심사의견	○ <u>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u>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은 민선9기 3대 시정 목표의 실현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 및 조직의 재배치와 관리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u>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u>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